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단57876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종진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249,7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지역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면서 원고에게 채무변제확인서(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114,255,000원,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 합계 120,249,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채무인 C지역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등 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대출금 채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거나 C지역주택조합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채무변제확인서에 기재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